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5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이헌승·김성원·김도읍

최형두 · 조태용 · 하영제

서병수 · 박성민 · 김태흠

권영세 · 최춘식 · 이주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관리 및 조치가 미흡하며,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 외의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휴업·폐업"을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로,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	제35조(준용 규정)
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	
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	
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	
의 <u>휴업ㆍ폐업</u> 등에 관하여는	<u>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u>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	
은 제외한다), <u>제15조 및 제16</u>	<u>제15조,</u> 제16조(제1항
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	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
한다.	<u>은 제외한다)</u>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	
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	
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 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 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26. (생 략) <u><신 설></u>

27. ~ 41. (생 략) ② ~ ④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